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 · 수익 목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 · 수익허가 기간)** ①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은 16 개월(2023. 10. 1.부터 2025. 1. 31.까지)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의 갱신을 원하는 사용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연간사용료는 금 \_\_\_\_\_ 원으로 하고(부가가치세는 별도),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사용 · 수익허가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첫째 연도 이후 사용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제4조(관리비)** ① 사용자는 공단이 산정한 관리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는 월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인·허가 이행)** ① 사용자는 영업 개시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인·허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손해보험 등)** ① 사용자는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한 각종 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 및 휴업)** ①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부나 공단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휴장한 경우에는 휴장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구조변경, 추가시설 설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 ③ 사용자는 공단이 안전, 위생, 소방 등의 점검을 위하여 허가재산에 출입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사용자에게 출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허가재산에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공단 규정 등과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사항)**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수익의 목적 변경
2.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재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5. 허가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단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허가 취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제6조의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인·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소 된 경우
3. 사용자가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4. 승인 없이 영업시간을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7. 사용자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허가 취소요청)** 사용자가 사용 · 수익허가를 취소받고자 할 경우에 는 2개월 전에 사용 · 수익허가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 반환)** ①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사용 · 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단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였거나 원상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회복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 수익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및 권리금 불인정)**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자의 연고권이나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7조(공단의 면책)** ① 사용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공단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사용 · 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제18조(관계법령 적용 등)** ① 본 사용·수익허가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입찰 시 확약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은 본 허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관할법원)** 공단과 사용자 간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공유재산(공영주차장) 사용 · 수익허가 특별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별조건은 「귀빈동편 등 3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 사용자는 사용 개시일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금액 또는 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전체 계약기간의 사용료 총액)의 10%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① 사용자는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고 주차관리원 전원이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요금 징수 정산 시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정확히 숙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사용료 조정)** 본 사용 · 수익허가 후 조례가 변경되거나 대구광역시 또는 공단의 정책에 따라 주차요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변경된 조례 또는 정책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다.

**제5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이용요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주차시간은 운영시간 내 차량이 주차장에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차 후 10분 이내에 출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의 경우 09:00 ~ 18:00 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무료 개방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정해진 주차장별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무료개방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명절 휴무)** 설 및 추석 전후 기간 중 공단이 지정하는 6일간은 사용·수익허가한 모든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공단에 사용료의 감면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주차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사용자는 주차장 시설 구역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이전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장 내 주차관제기, 요금계산기 등 주차장 시설이 고장나거나 파손될 경우 즉시 수리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공단이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 시설 구역 내의 환경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방치 차량과 적치물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제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긴급대피 조치를 취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소방시설이 위치한 주변 주차구획에 대하여 화재 발생 및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차량 긴급 이동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 및 부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시설물(각종 기계, 기구, 주차관리원 부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단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 휴지 등)** 공단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휴지·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9조(주차 거부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다수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기타 공단으로부터 정당한 지시를 받아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민감정보 수집 금지)**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주차관리원 등록 의무)** 사용자는 운영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주차장별 근무할 주차관리원(성명, 주소, 연락처)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 중 주차관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주차관리원 관리 및 교육이수 의무)** ① 사용자는 주차관리원을 상시 고용·배치하고 공단에서 지정한 복장(모자, 명찰, 조끼 등)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하며, 주차관리원 실명 및 안내전화를 비치(게시)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등록된 주차관리원 포함)는 공단이 시행하는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수시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주차관리원이 근무 중 저지른 비위 또는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성실납세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 탈루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사용자는 주차장 운영에 소요된 제세공과금 및 오물 수거 비용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사용자는 본 사용·수익허가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장 반환 의무)**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주차장을 즉시 공단에 반환한다.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용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위·수탁계약 종료)**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에 대구광역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해석)** 본 사용·수익허가 조건의 해석상 차이나 본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18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표]을 따른다.

[별표 1]

【 수탁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수탁자의 위반행위	위탁자의 조치사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0조(금지사항) 위반 제11조(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취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특별조건 제13조(성실납세 의무) 위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9조(준수사항) 위반	주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특별조건 제2조(주차요금) 위반 제4조(운영시간) 위반 제5조(명절휴무) 위반 제6조(주차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 제7조(주차장 휴지 등) 위반 제8조(주차 거부 금지) 위반 제9조(민감정보 수집 금지) 위반 제11조(주차관리원 등록 의무) 위반 제12조(주차관리원 관리 및 교육이수 의무) 위반	경고
※위탁자의 조치사항 적용기준 1. ‘주의’는 위반사항이 최초이거나 경미한 경우 2. ‘경고’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중요한 경우 또는 공단의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허가취소’는 위반사항이 3회 이상 빈번하거나 매우 중요한 경우 또는 공단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4.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고, ‘경고’ 3회 이상시 ‘허가취소’ 조치할 수 있다.	허가취소

상기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허가조건 위반 시 공단의 처분을 수용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공 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사용자” 성명 : (인)

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차요금표 】

### ■ 귀빈예식장동편, 동서식품

구 분	1회 주차요금		일주차	월정기
	최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일반차량	1,000원	500원	5,000원	60,000원
장애인, 유공자, 병역명문가	2시간 무료 초과시 10분마다 250원		5,000원	50,000원
요일제, 아이조아 카드	500원	250원	5,000원	50,000원
경차, 친환경 차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 ■ 동대구초등학교서편

구 분	1회 주차요금		일주차	월정기
	최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일반차량	600원	300원	6,000원	80,000원
장애인, 유공자, 병역명문가	2시간 무료 초과시 10분마다 250원		3,000원	40,000원
요일제, 아이조아 카드	300원	150원	3,000원	40,000원
경차, 친환경 차	240원	120원	2,400원	32,000원

※ 주차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은 절사